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2375호)	최은석의원	2025. 8. 26.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(2025.11.12.) 상정 후 제안설명·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·제3차·제5차 조세소위 심사, 제8차 조세소위 의결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13763호)	정태호의원	2025. 10. 28.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(2025.11.12.) 상정 후 제안설명·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·제3차·제5차 조세소위 심사, 제8차 조세소위 의결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(안 제9조의2 신설)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(안 제4조제4호).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제91조의22까지”를 “제91조의22까지, 제91조의25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납부유예)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비과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4조(비과세) ----- ----- ----- --.
1. ~ 3의3. (생략)	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6조의3·제86조의4·제87조·제87조의2·제87조의5·제88조의2·제88조의4·제88조의5·제91조의14, 제91조의16부터 <u>제91조의22까지</u> 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91조의22까지</u> , 제91조의2
4의2. ~ 12. (생략)	<u>5</u> ----- ----- 4의2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제9조의2(납부유예)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.</u>